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3. 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5년 2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110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5. 3. 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김 종 선

가. 제안이유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아현동 400번지, 401번지 7,499.1㎡를 공덕동에 편입,
- 공덕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으로 아현동 649의1번지 내지 649의 33번지 총 33필지 1,216.4㎡를 공덕동에 편입,
- 신·구수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원칸타빌아파트 단지내 구수동 107번지 2,907.1㎡를 신수동으로 편입하고,
- 상암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산동 490-19번지와 33필지 13,772㎡를 증산로를 경계로 상암동으로 편입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공덕제2구역 및 공덕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신·구수재건축사업등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치되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초래되고 행정능률도 저해하고 있어 동 아파트단지를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 생활편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4월 제95회임시회와 2004년 9월 제106회임시회에 상정된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원안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단서규정의거 서울시장에게 변경 승인을 신청한 결과 2003년 5월과 2004년 10월에 각각 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현재의 도로망과 아파트 외곽도로를 기준으로 동간 경계가 공덕1동으로 조정된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동일 아파트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법정동인 아현동 400번지, 401번지 7,499.1㎡(약 2,268평)를 공덕동(공덕1동)으로 편입하고자함.

○ 한개의 아파트단지가 2개의 행정동과 법정동에 걸쳐있는 공덕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아현동 649번지 1호에서 649번지 33호까지 총 33필지 1,216.4㎡(약 368평)를 공덕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여 공덕2동에 편입하고자함.

○ 신수동 관할구역안에서 신·구수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대원칸타빌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법정동인 구수동 107번지 2,907.1㎡(약 879평)를 신수동으로 편입하고자함.

○ 불합리한 동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산로를 기준으로 상암택지개발사업구역내에 있는 성산동 490번지 19호외 33필지 13,772㎡(약 4,166평)를 상암동에 편입하고자함.

<검토의견>

○ 동 건은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동 경계를 정비하고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관련부서에서는 동 조례안이 확정되면 동 명칭 및 동간 경계변경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법 제4조 및 지적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승인 통보된 변경지번을 구 해당부서는 물론 전국 시·군·자치구 등의 해당기관에도 통보하여 각종 공부에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대원칸타빌아파트는 법정동만 변경하는 것인가?

○ 답변요지(김종선 주민자치과장) : 구수동을 신수동으로 법정동만 변경하는 것임.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아현동 400번지, 대흥동 745번지의 동간 경계변경이 서울시에서 2003년 5월에 승인되었는데 조례개정이 늦은 이유는?

○ 답변요지(김종선 주민자치과장) :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준공이 늦게 났음.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공덕1동에 편입되는 아현동 400번지, 401번지의 인구수와 기존주택 수는?

○ 답변요지(김종선 주민자치과장) : 파악하지 못하였음.

○ 질의요지(남두희 위원) : 행정구역 변경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답변요지(김종선 주민자치과장) : 예.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2.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 가.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아현동 400번지, 401번지 7,499.1㎡를 공덕동에 편입,
- 나. 공덕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으로 아현동 649의1번지 내지 649의33번지 총 33필지 1,216.4㎡를 공덕동에 편입,
- 다. 신·구수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원칸타빌아파트 단지내 구수동 107번지 2,907.1㎡를 신수동으로 편입하고,
- 라. 상암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산동 490-19번지의 33필지 13,772㎡를 증산로를 경계로 상암동으로 편입함.

3. 개정근거

- (1) 지방자치법(2004. 1.29 법률 제7128호) 제4조제3항
- (2)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1999.12.31 행정자치부령 제84호)

4. 조 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첨조치 없음

6. 기타사항

- 가. 마포구의회 의견청취(원안의결 2004.9.13)
- 나. 서울시 승인[행정13100-1337(2003.5.12), 행정과-11752(2004.10.11)]
- 다. 입법예고(2004.11.20 ~ 12. 9)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라.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5. 2. 18)
- 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바. 행정구역변경대상 현황도 각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확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조례 하단 (개정연혁표2) 다음에 (개정연혁표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연혁표3)

아현동 400번지, 401번지를 공덕동에 편입한다.

아현동 649의1번지 내지 649의33번지를 공덕동에 편입한다.

구수동 107번지를 신수동에 편입한다.

성산동 490의19번지, 490의20번지, 491번지, 491의3번지, 492의1번지, 492의3번지, 492의5번지 내지 492의12번지, 492의14번지, 492의19번지, 492의21번지, 493번지, 493의3번지, 494의1번지, 494의5번지, 494의7번지, 494의8번지, 494의10번지 내지 494의15번지, 495번지, 495의1번지, 산51의4번지, 산53의46번지, 산53의47번지를 상암동에 편입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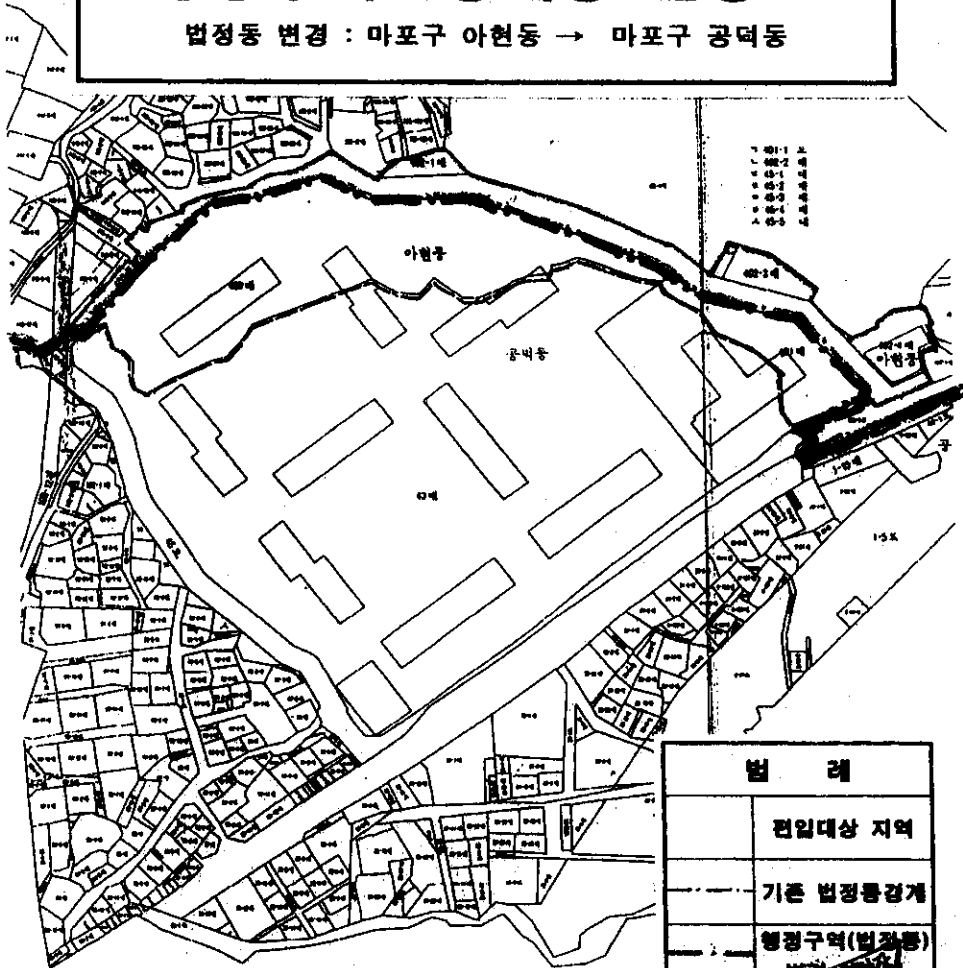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개정연혁표3) 아현동 400번지, 401번지를 공덕동에 편입한다. 아현동 649의1번지 내지 649의33번지를 공덕동에 편입한다. 구수동 107번지를 신수동에 편입한다. 성산동 490의19번지, 490의20번지, 491번지, 491의3번지, 492의1번지, 492의3번지, 492의5번지 내지 492의12번지, 492의14번지, 492의19번지, 492의21번지, 493번지, 493의3번지, 494의1번지, 494의5번지, 494의7번지, 494의8번지, 494의10번지 내지 494의15번지, 495번지, 495의1번지, 산51의4번지, 산53의46번지, 산53의47번지를 상암동에 편입한다.

행정구역변경대상 현황도

법정동 변경 : 마포구 아현동 → 마포구 공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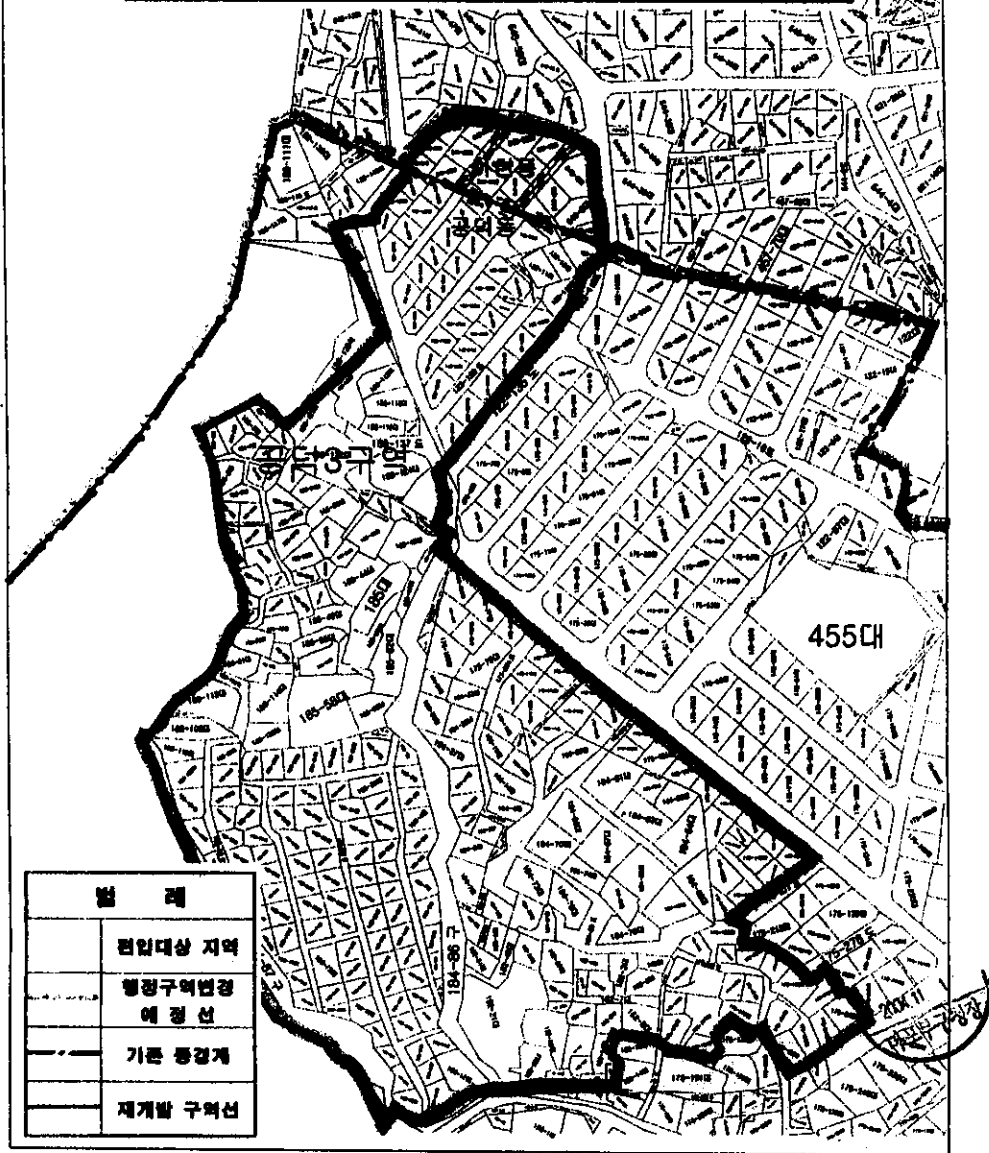


※ 지적확정측량 성과도에 의거 작성

법 레	
	전입대상 지역
	기존 법정동경계
	행정구역(법정동) 변경지역
	기존 동경계
	재개발 구역선

행정구역변경대상 현황도

법정동 변경 : 마포구 아현동 → 마포구 공덕동



행정구역변경대상 현황도

법정동 변경 : 마포구 구수동 → 마포구 신수동

